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4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를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의 지급 및 기준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은 “월 900,000원”에서 “월 1,2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은 “월 200,000원”에서 “월 300,000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2024년도 : 월 400천원 × 22명 × 12개월 = 105,600천원

다. 합 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에 의함

라. 입법예고 : 2024. 3. 7. ~ 2024. 3. 1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성북구 의회”를 “성북구의회(이하 “성북구의회”라 한다)”로, “수집·연구”를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북구”를 “성북구의회”로,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성북구”를 “성북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개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로 한다.

제4조 중 “의장”을 “성북구의회 의장”으로, “여행할때는”를 “여행할 때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할때”를 “할 때”로, “운임 (철도)”를 “운임(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때”를 “할 때”로, “운임 (철도)”를 “운임(철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p> <p>① 서울특별시 <u>성북구 의회</u>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의 <u>수집·연구</u>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p> <p>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u>성북구</u>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u>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u>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u>900,000원</u>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u>200,000원</u>으로 한다.</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서울특별시 <u>성북구</u>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u>1개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u>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③ (생략)</p> <p>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p>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p> <p>① ----- <u>성북구의회(이하 “성북구의회”라 한다)</u> ----- ----- <u>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u>----- -----.</p> <p>② ----- <u>성북구 의회</u> ----- ----- <u>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u> ----- --.</p> <p>③ ----- ----- -- <u>1,200,000원</u>----- ----- <u>300,000원</u>-----.</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성북구의회</u> ----- ----- -----<u>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여비의 지급) -----</p>

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성북구의회 의장----- 여행할 때에-----.

제5조(여비의 종류) ① -----  
-- 할 때 -----  
운임(철도-----  
-----  
-----.

② ----- 할 때 -----  
----- 운임(철도-----  
-----  
-----.